

수원지방법원 2015. 5. 19 선고 2015가단9420 판결 [구상금청구(시효연장)]

---

## 전 문

원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

피고A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5. 5. 19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52,132,796원 및 그 중 48,673,016원에 대하여 2015. 2. 10.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## 2. 근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**판사조성필**

별지